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0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21.3.29.)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154호(' 21.3.30.)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을 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

1. 대상지(변경)

		(가)		(㎡)	
			551-14	63,995	551-14 가) (
			551-14	73,422.8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

	2020. 9.21.	63,995	가 ()
	2020.9.21.() 2022.6.23.(가)	73,422.8	

3. 지정사유(변경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 제2항 규정에 따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에 한하여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

5. 관계도면 : 붙임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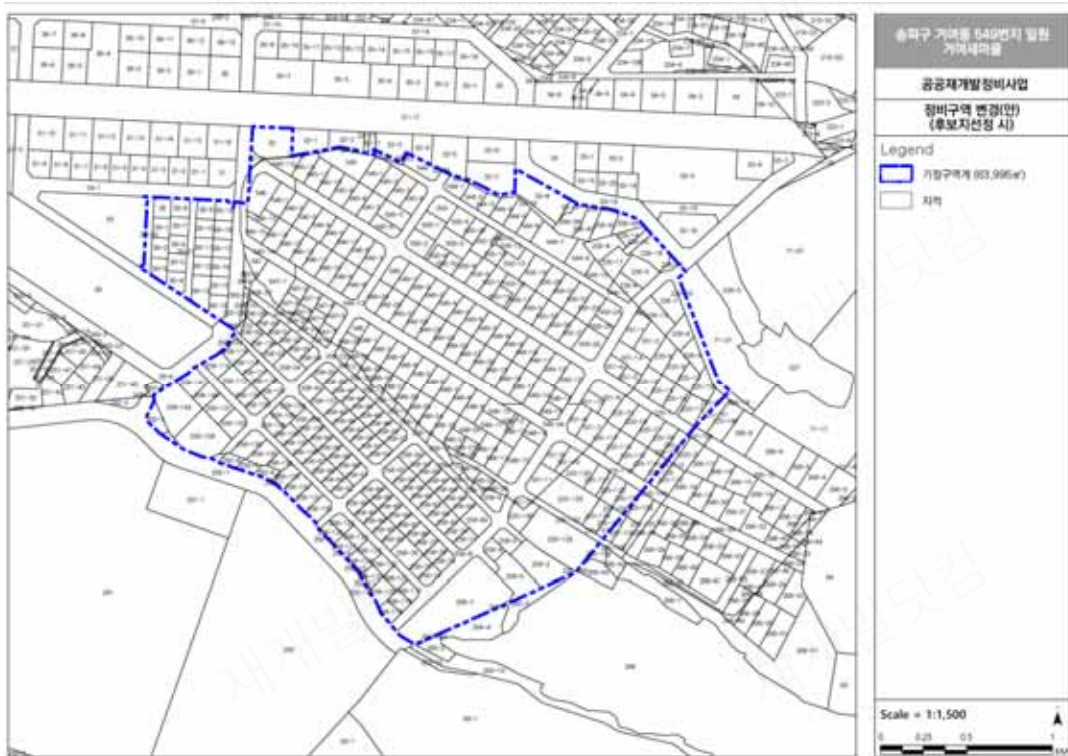
6.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02-2133-7193),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8) 및 송파구 주거사업과(☎02-2147-28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

○ 지정



○ 변경

